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993년 12월 13일

총무위원회

1. 심사 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3년 11월 24일 담당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3년 11월 24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1993년 12월 13일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상정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국장 김규석, 기획감사실장 정석조, 문화공보실장 황근성)

- 가. 제안이유 : 1994년도 예상되는 수입에 따라 구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합리 재정으로 국민의 복지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 효율적으로 운영코지함.

나. 주요골자

○ 구전체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93 예산		증 감		비 고
		당 초	최 종	당 초	최 종	
계	72,680	58,546	77,884	14,134	△5,204	
일반회계	68,652	55,588	73,663	13,064	△5,011	
특별회계	4,028	2,958	4,221	1,070	△193	
특별회계 내역	의료보호	1,970	1,854	2,897	116	△927
	새마을	243	189	189	54	54
	영세민	315	315	315	0	0
	주차장	1,414	600	820	814	594
	주거환경개선	86	-	-	86	86

○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단위:천원)

구 分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 减율 (%)	비 고
세 입	계	53,575,685	44,981,778	8,593,907	19.1	
	일반회계	53,332,925	44,793,078	8,539,847	19.0	
	특별회계	242,760	188,700	54,060	28.6	
세 출	계	33,215,958	18,627,727	14,588,231	78.3	
	일반회계	32,973,198	18,439,027	14,534,171	78.8	
	특별회계	242,760	188,700	54,060	28.6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이우상)

가. 세입 주요 내용

○ 증가요인 : 신체적으로 19.1%가 증가 되었는데 내용별로 보면,

보통세,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인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가 증가됨.

○ 감소요인 : 목적세, 시도세 징수 교부금, 이자수입,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국·공유재산
무단점용료, 잡수입 등 감소

○ 검토내용 : 국·시비인 지역개발, 사회복지비, 문화체육비 보조금이 증가 되어 높아
났으며,

자체 수입인 종합토지세가 1,758,000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9.4%가 높아 났는데
부과에 따른 예산편성이 정확한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자체 수입인 목적세 193,000천원, 증지수입 78,761천원,
공과요금 이자수입 100,005천원,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 387,600천원,
징수입 160,881천원 감소는 자치구 재정 자립도를 떨어 놓리는 것으로서
재정 자립을 위한 자체 재원 마련에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며,
급구 예산 운용 효율화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나. 세출 주요 내용

○ 일반 회계

(단위:천원)

과 목	예 산 액	전 년 도	증 감	검 토 내 용	비 고
기 관 운 영 (2111)	10,617,939	882,017	9,735,922	0. 기관공통운영의 일반운영비, 여비는 예산절감 운영으로 감소 0. 복리후생비, 보상금, 급여관리 정액수당은 인건비적 성격으로 인상분 반영 0. 업무 추진비는 전년대비 36,960천원 늘어 났는데, 적정액인가 검토 필요 0. 민간 이전, 연금 지급금은 일용인부 회직금, 국민연금 부담금 등으로서 전년대비 적정 인원 검토 필요	71-82 페이지
기 획 관 리 (2121)	156,163	174,297	△18,134	0.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감소는 예산절감 운영 으로 감소 0. 보상금에서 포상금 등 감소는 구정 발전을 위한 지원 시책 제안으로서 감소가 적정한바 검토 필요	83-87 페이지
심 사 분 석 (2122)	10,300	0	10,300	0. 일반수용비는 주요업무시행 계획에 필요한 인쇄비이나 전년도 대비 필요성 및 적정 수량, 산출금액 검토 필요	88 페이지
예 산 운 영 (2123)	39,977	33,006	6,971	0. 비 정규직 보수의 일용인부임은 단가 인상분 반영 0.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증가는 필요한 종류, 수량, 산출금액 검토 필요	89-92 페이지
법 무 관 리 (2127)	262,545	48,620	213,925	0. 법제 및 송무관리의 보상금 증가는 고문변호사 수당 인상분 반영 0. 일반운영비, 배상금은 전년도 대비 증가분 검토 필요	93-95 페이지

과 목	예 산 액	전 년 도	증 감	검 도 내 용	비 고
통 계 관 리 (2128)	21,573	27,190	△5,617	0. 일반운영비의 재료비, 자산취득비는 필요분만 계상 감소 0. 일용인부임은 단가 인상분 반영 0.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인 통계연보 도서관리인 인쇄비 증가액은 필요 수량 검토 필요	96-98 페이지
감 사 관 리 (2331)	23,136	12,957	10,179	0. 일용인부임은 단가 인상분 반영 0. 공직자윤리위원회 신설로 인한 일반 수용비, 운영수당, 회의비, 보상금 계상 0. 급량비는 동감사와 야간순찰활동시 필요분 계상	99-101 페이지
공 보 관 리 (2211)	129,179	121,816	7,363	0.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연료비 보상금 감소는 예산절감운영 계상 0. 관서당경비, 시설장비유지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분 반영 0. 업무추진비의 통보활동비 증가분은 사용목적, 용도 검토 필요	113-116 페이지
예 술 문 화 (6111)	464,635	86,425	378,210	0.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연료비 보상금은 예산절감 운영에 따른 감소이나 업무추진비 증가는 전년 대비 검토 필요 0. 문예 행사, 문예 시설 확충비는 문예 진흥을 위해 계상	119-127 페이지
문화재 관 리 (6112)	35,280	37,310	△2,030	0. 보상금인 전통문화 전승 보조금 향사비 지원을 시비보조금 감소	128-129 페이지
서 무 관 리 (2311)	732,119	747,953	△15,834	0. 기타직보수,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증가는 인상 요인 반영 0.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 의전관리의 특수활동비 예산절감으로 감소 0. 복리후생비 감소는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감소요인 검토 필요 0. 통신관리의 일반운영비 증가는 인상요인 반영 0. 기타직 보수, 피복비, 복리후생비는 적정 인원 계상 검토 필요	143-159 페이지

과 목	예 산 액	전 년 도	증 감	검 토 내 용	비 고
인사 관리 (2312)	307,332	217,264	90,068	0. 인사관리, 수당에서 초과근무수당 계상은 기관운영(2111), 급여관리 수당과 부과 연계 하여, 필요성과 각 부서와의 형평성 검토 필요 0. 일용인부임, 재료비는 단가 인상분 계상	160-165 페이지
예비비 (8411)	143,960	408,439	△264,479		
인사 관리 (2312)				0.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적정 품목, 수량, 금액 산출 검토 필요 0.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증가는 적정 금액 검토 필요 0. 고시관리,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교육 훈련 여비 감소는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 감소 요인 검토 필요	
국민운동지원 (2314)	3,400,097	0	3,400,097	0. 국민운동관리의 일반운영비 보상금, 민간이전비는 전년대비 적정금액 검토 필요 0. 건강한국토사업의 일반운영비, 보상금은 전년대비 적정금액 검토 필요 0. 시설비는 시비보조 증가와 구비 반영으로 인한 사업으로 계상	166-179 페이지
민원실 운영 (2316)	292,859	438,190	△145,331	0. 민원실관리,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피복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절감운용으로 감소 0. 호적, 주민등록 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주민등록증 접착기기 1대 구입은 기존 보유분과 연계하여 필요성 검토	180-188 페이지
일선행정조직 운영 (2321)	305,316	339,377	△34,061	0. 비 정규직 보수의 일용인부임은 단가 인상분 반영 0. 읍·면·동 행정지도위 일반운영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는 예산절감 운영으로 감소 0. 보상금의 증가분은 증가요인 검토 필요	189-196 페이지

과 목	예 산 액	전 낸 도	증 감	검 토 내 용	비 고
지 역 안 정 (2341)	15,270	0	15,270	0.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년도 대비 검토 필요	197 페이지
세 성 관 리 (2411)	1,355,846	538,419	100,427	0. 비 정규직 보수의 일용인부임과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은 인상 요인분 반영 0.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증가는 적정 품목, 수량, 신출기초 등 검토 필요 0.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 관서당경비 재료비, 여비 감소는 예산절감 반영 0. 특수활동비, 보상금 증가는 적정 금액 검토 필요 0. 세외수입관리, 일반운영비의 일반 수용비 증가는 전년도 대비 필요 수령, 품목, 산출금액 검토 필요 0. 일반운영비의 재료비 증가분은 적정 인원 검토 필요 0.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보상금, 차치단체이전비 증가분은 필요성, 적정 금액, 산출근거 검토 필요	198-215 페이지
세 무 관 리 (2412)	13,495	3,720	9,775	0.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증가는 재원 확보를 위한 비용 반영 0. 보상금 증가는 동 세정업무 적극 추진 반영	216-217 페이지
회 계 관 리 (2421)	954,308	684,930	269,378	0. 비 정규직 보수의 일용인부임 증가는 단가 인상분 반영 0.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급량비는 인상 요인 반영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필요성에 의해 신설 반영 0. 자산취득비, 차량관리는 행정수요에 따른 필요성 반영	218-226 페이지

과 목	예 산 액	전 년 도	증 감	검 토 내 용	비 고
재 산 관 리 (2422)	1,627,480	1,754,601	△127,121	0. 국 ·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및 특별판공비, 여비는 시비 및 절감으로 감소 0. 영선관리,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절감으로 감소 0.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소는 감소 원인 분석 필요	227-232 페이지
(2131)				는 업무추진시 경비 반영 0. 장비 및 자료관리의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설비는 전년대비 적정금액, 산출근거 검토 필요	페이지
청소년 복 지 (3133)	141,282	63,490	77,792	0. 일용인부임은 단가 인상분 반영 0. 일반행정비, 보상금 감소는 절감 운영 반영 0. 시설비 증가분은 목적, 필요성, 산출금액 검토 필요	241-244 페이지
관 광 관 리 (6121)	93,038	30,634	62,404	0.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감소는 절감 운영 반영 0. 일반운영비의 임차료, 재료비 증가 분은 전년대비 검토 필요 0. 특수활동비, 보상금, 시설비의 증가 분은 적정금액, 산출근거 검토 필요	247-251 페이지
체 육 진 흥 (6211)	230,396	168,526	61,870	0. 체육관리의 일반운영비, 보상금, 민간이전 증기분은 체육진흥 위한 계상으로 판단되나 적정금액 산출 기초 검토 필요 0. 직장 체육팀 운영의 보상금은 블링 팀 인건비 상승분 반영 0.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는 체육시설 설치, 보수 반영	252-259 페이지

과 목	예 산 액	전 년 도	증 감	검 토 내 용	비 고
민방위 관리 (7111)	131,743	114,089	17,654	0. 일반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감소는 예산절감 운영 0. 보상금, 자산취득비 증가분은 전년대비 검토 필요 0. 민방위시설장비,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감소는 예산절감 운영 0. 민방위교육훈련, 일반수용비의 공공 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및 보상금 감소는 절감 운영 0. 일반수용비의 재료비 증가분은 증가 원인 내용 검토 필요	263-273 페이지
병 사 관 리 (7112)	56,089	55,411	678	0. 일반수용비, 여비 감소는 극비 보상금 감소 0. 보상금 증가는 극비 보조금 증가	274 페이지
비 상 대 책 (7113)	18,050	12,920	5,130	0. 일반수용비 감소는 예산 절감 운영	275-276 페이지
지방채 상환 (8111)	22,920	88,775	△65,855	0. 차입금이자 감소와 국내 차입금 원리금 상환금 증가는 내용 검토 필요	279-280 페이지
제 지 출 금 (8211)	999	2	997	0. 식수 예치금 반환 9건 반환금	281 페이지
기 관 운 영 (2111)	7,540,104	6,881,171	658,933	0. 복리후생비, 급여관리의 기본급, 수당은 인건비 인상분 반영	285-293 페이지
기 획 관 리 (2121)	88,200	58,800	29,400	0. 일반행정비의 운영 수당 인상분 반영	294

과 목	예 산 액	전 년도	증 감	검 토 내 용	비 고
서 무 관 리 (2311)	2,576,868	2,620,260	△43,392	0.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증가는 인상분 반영 0. 일반운영비의 관서당경비, 연료비,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시설비 감소 는 예산 절감 편성 0. 보상금 증가는 전년대비 증가 요인 검토 필요	295-310 페이지
민원실 운 영 (2316)	147,450	160,650	△13,200	0. 민원실관리, 일반운영비의 일반 수용비 감소는 동 민원 행정의 중요성을 감안 꼭 필요한 부분 감액 인지 검토 필요 0. 호적 주민등록 관리, 일반운영비의 재료비 증가는 단가 인상분 반영	311-313 페이지
세 정 관 리 (2411)	10,800	5,400	5,400	0. 특수활동비 증가는 적정 숫자 검토 필요	314 페이지
회 계 관 리 (2421)	62,910	0	62,910	0.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동 보유차량 운영비 반영	315-316 페이지
재 산 관 리 (2422)	215,892	286,895	△71,003	0.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 증가는 동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 시범 운영과 인상요인 반영 0. 시설비, 시설 부대비, 감소는 예산 절감 운영 반영	317-323 페이지
가 정 복 지 (3131)	24,100	0	24,100	0. 시설비, 자산취득비 증가분은 필요성, 적정 금액, 산출근거 검토 필요	324-327 페이지
지 역 개 발 (5222)	1,200,000	1,212,000	△12,000	0. 시설비 감소는 동 일선 행정의 중요성을 감안 동 포괄사업비 감소 요인 검토 필요	328-329 페이지
체 육 진 흥 (6211)	30,000	30,000	0	0. 동별 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계상	331 페이지

○ 특별 회계

과 목	예 산 액	전 년 도	증 감	검 토 내 용	비 고
새마을 소 득 특별 지원금 운 영 (111)	4,004	3,705	299	0. 일반운영비의 재료비 증가는 보조 사액 단가 인상분 반영	345 페이지
새마을 소 득 특별지원사업 (211)	238,000	184,000	54,000	0. 융자금의 일반 융자금 증기분은 사업 융자금 대상 인원 검토 필요	345 페이지
예 비 비 (411)	756	995	△239	0. 예비비 감소 계상	346 페이지

다. 검토의견 (종합)

각 부서 일반은영비의 일반수용비 감소는 정부의 신경제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사료되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감소는 예산 운영시 경직성과 차후 주경에 반영될 여지가 있어 정확한 계수에 의하지 않은 무리한 감소인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94년도 본예산이 6백86억5천2백49만3천원인데 비해 통상 예비비는 전체의 1%로 감안할 때 6억 정도는 꼭 필요할 것으로 보아지나 금년 예비비는 1억4천백오십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음은 재해 등 예기치 못한 사태 등을 감안할 때 예비비의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보겠으며, 따라서 충분한 검토에 의거 식감되는 부분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1. 공보관리(P113-116)의 경우는 신문구독료를 매년 식감해나가겠다고 공보실장이 공식 공언한 바 있고 특히 현재 각 가정에 신문을 안보는 가정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신문 보급이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계속해서 흥보 활동비가 증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시향인바 금년도 「안」 1,410부 중 410부(246,000천원)은 식감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2. 예술문화(P119-127)의 가족 음악대회 경우는 전 주민에게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P.R도 부족한 상태이며 금년 개최시에는 관람인도 기대 이하로 적었고 중산층의 적극적인 호응도가 극히 적으며 맛벌이 부부의 자녀 또는 영세민의 자녀에게도 위화감 조성의 우려도 감안하여야 하며,

취지는 좋으나 좀 더 많은 어린이나 청소년, 성인이 참여하여 건전 노래 풍토가 생활화 되어 생활의 흐름에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방안의 검토도 바람직할 것 같으며, 가족음악회는 신중히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겠으며,

3. 국민운동 지원비의 일반은영비 피복비(P170)의 경우는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의 피복비 2백 2십5만원 및 자연보호 지도위원 피복비 7십5만원은 매년 지급한다는 것은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의 어린이는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관리를 잘하면 얼마든지 재사용할 수 있고 또한 지도위원은 새마을부녀회원, 새마을지도자, 또는 바르게위원, 등 자생단체 조직원들이 거의 대부분으로서 매년 교체하는 것도 아닌데 매년 피복비를 재 지급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적 요인으로 판단되며,

4. 민원실 운영(P182)에 있어 민원 창구 직원 근무복 제작비 5백십1만6천원 및 친절봉사 시범팀 근무복 제작비 61만9천4백4십4만원은 공무원들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그대로 근무하고 있고 설사 이동이 된다 이는 극소수의 인원이므로 이는 전액 삭감 내지 대폭 삭감해야 될 이유는 충분할 것임.

5. 일선 행정조직 운영의 반회보 제작은(P190) 반상회의 활성화 등에 있어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사실상 반상회 참석률은 일부 지역은 극히 저조한 것이 현실이고 보면 실제의 반상회 참석률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상회보를 돌려보는 등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자원을 절약한다는 취지에서 실제의 필요량을 감안하여 재 조정의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성은 없는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6. 주민자율 방범대 활성화(P194)에 따른 가스총 구입비 360만원은 가스총의 경우 일정 기간 후 가스를 재보충해야 하는 등 철저히 관리 하여야 함에도 적정한 관리 예산도 없이 총기만 구입 한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방범활동에 꼭 가스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어 2개월 정도 지나면 가스가 없어지는 가스총은 향후 관리상 문제기 많다 할 것이므로 재고해야됨.

7. 보상금 포상금 등은 공무원 세입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되 따르고 따라서 포상금 지급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아지나 세입의 징수는 관계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이고 체납액은 징수의 부진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발생되는 것이고 보면 체납시킨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질 수도 있겠고 체납액의 징수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금의 지급도 좋지만 표창 이라든지 다른면에서의 검토의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아짐.

8. 청소년복지 재료비(P250)의 겨우는 여름철 광안리해수욕장의 질서개도 요원 8백8십6만6천원은 구공무원, 경찰 등의 파견 근무외에도 해병동지회, 바르게위원회, 새마을지도자 등의 지원봉사 및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지원되고 있으며, 또 간호보조원의 경우는 보건소의 간호사들의 파견 근무 등으로 활용 하여도 충분할 것이므로 전액 삭감이 타당함.

9. 194페이지 보상금의 1일 구정 시찰비는 낸도별 계속 편성으로 정부의 신경제 계획에 비추어 목적, 용도, 사업 효과 등에 비추어 필요성 판단과 필요하다면 적정 인원과 산출 금액이 적정한지 검토 필요하며,
10. 244페이지의 광안리해수욕장 상설 무대 설치는 설치 목적, 용도, 사업효과 등에 비추어 설치 필요성과 설치시 실제 활용 관리시 나타날 문제점, 대책 등에서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예산 편성인지 사전 검토 필요하며,
11. 일선 행정 기관인 동 예산편성에서 민원실 관리, 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일률적 감소는 일선 동 행정의 중요성과 지역 특성을 감안치 않고 획일적으로 감소 처리하여 예산 운영시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결여 되어 있음.
12. 94년도 예산에서 어느 부분은 단습적이며 일률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보이며, 현장 확인을 결행한 예산 편성과 사업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 편성 및 편성시 산출근거가 미흡한 점은 차후 예산 편성시 정확한 근거에 의한 효율성과 합리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